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8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김주영・박 정・허성무

정태호 • 문정복 • 이기헌

한정애 • 박상혁 • 박균택

김태선 • 박홍배 • 이학영

강준현 · 김형동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마약"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지)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u> 지) <u>①</u> <u>자동차등</u> -----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제2조의 마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 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과 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이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 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1	(현행과	같
<u>\$\rightarrow\text{\tin}}\text{\tin}\text{\tetx{\text{\texi}\text{\text{\text{\text{\text{\tetx{\texi}\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i}\tinttitt{\texi}\text{\text{\texi}\text{\texi}\text{\texi}\tex</u>			

2								
1.								
			<u></u> ス]443	조제	2항	또	는
제4	5조기	세2항	· — — -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로 한정한다)

2. (생략)

③・④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